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해임하도록 한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경우 (이사직은 유지), 대표이사 해임에 대하여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직은 유지하고 대표이사에서만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표이사 해임 이유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즉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은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피고 회사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해임하는 경우에도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성립하므로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이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논거로, (i)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임기를 정하지 않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른 점, (ii)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 지위가 상실되는 반면,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의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의 지위는 유지되는데, 이런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iii)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인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

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iv)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구성원

기영석

변호사

02-316-4021

ysgi@shinkim.com

박성기

변호사

02-316-4280

skipark@shinkim.com

이세리

변호사

02-316-4034

srlee@shinkim.com

김종수

변호사

02-316-1678

jsokim@shinkim.com

윤혜영

변호사

02-316-4491

hyyun@shinkim.com

송우용

변호사

02-316-1696

wysong@shinkim.com

김종현

변호사

02-316-1721

johkim@shinkim.com